

2026년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2차 재공고

2026년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안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역보건법 제15조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임용직위 및 주요업무

임용 예정 직위	임용직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직무내용
상록수 보건소장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 4호)	1명	임용일 ~ 2년	▶보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중기 및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등

※ 임용권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 민간인은 임용계약을 통해 임용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기간 동안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 자격 요건(기준일: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연령, 성별, 주소지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다.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 퇴직일
 -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임용분야 세부 자격요건

1) 의사면허 소지자

-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면서, 경력요건 ① ~ ⑥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필수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경 력 요 건	(관련학과) 학 기 력 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 격 증 기 준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 무 원 경 기 준	④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경 기 준	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과 관련된 분야		

2)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 소지자

-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면서, 경력요건 ① ~ ②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필수요건		의료법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면허 소지자
자 격 증 기 준	①	관련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민 간 경 기 준	②	관련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과 관련된 분야		

3)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

-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면서, 경력요건 ① ~ ③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필수요건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공 무 원 경 력 기 준	① 관련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 간 경 력 기 준	③ 관련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과 관련된 분야	

※ 유의사항

1. 자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2. 학력기준은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
3. 경력요건의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주40시간 기준)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일시	장소	
11. 10.(화) ~ 11. 16.(월)	11. 18.(수) 전·후	11. 25.(수)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확인	12. 1.(화) 전·후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행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채용정보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인별 통지 없음)				

○ 시험방법

[1차 시험] :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응시 자격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2차 시험] : 적격성심사[서류심사+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 대상.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건을 검증하여 적격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통보

능 력 요 건	하 부 요 소
전문가적 능력	i)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ii)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iii)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전략적 리더십	i)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ii)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iii)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변화관리능력	i)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ii)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iii)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조직관리능력	i)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ii) 업무개선능력 iii) 자원활용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i)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ii)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iii)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6 응시원서 접수

- 원서접수 : 2026. 11. 10.(화) ~ 11. 16.(월) 09:00 ~ 18:00
- 접 수 처 : 안산시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시 대리접수 불가

- ▶ 방문접수 : 안산시청 본관 1층 북카페
- ▶ 등기우편 : (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총무과 공무원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15335)
- 응시수수료 상당 금액의 우편 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 동봉(응시표는 이메일 송부)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에 유의(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인정함.
- ▶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 서류 (기준일: 원서 접수일 현재)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해당 증명서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7 제 출 서 류 <원서접수 시 스테플러, 플래그(띠지) 사용 금지>

제출서류	비고
① 응시원서 1부 [필수] ▶ 안산시 수입증지 첨부(안산시청 민원실에서 납부 후 첨부) ※ 등기우편은 우편통상환 동봉(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개방형 4호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별지 제1호]
② 이력서 1부 [필수]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경력증명서 첨부(미첨부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 기재금지	[별지 제2호]
③ 자기소개서 1부 [필수]	[별지 제3호]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별지 제4호]
⑤ 동의서 3부 [필수] ▶ 자격검증동의요구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포함)	[별지 제5-1호] [별지 제5-2호] [별지 제5-3호]

제출서류	비고
⑥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필수]	[별지 제6호]
⑦ 서류전형자격요건본인의견서 1부 [필수] ▶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별지 제7호]
⑧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필수]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학사이상은 각 학위별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일체 제출	6개월 이내 발급
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필수] ▶ 구체적인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형태(전일, 주00시간) 등이 명시되고,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연락처 필수 ▶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서 또는 업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등의 증명서류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이나 주당근무시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 (미제출시 경력 인정 불가)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폐업회사 경력의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발급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를 함께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효력 불인정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개월 이내 발급
⑩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출력 가능 ▶ “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불일치 시 추가증빙서류 제출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반드시 제출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6개월 이내 발급
⑪ 임용 관련분야 면허증 사본 1부 [필수 또는 해당자]	
⑫ 그 밖에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8

보수 수준

- 경력직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 :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13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정하고,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임용예정직급	적용대상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개방형 4호	임기제공무원	-	70,490천원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학력·경력·자격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의해 반환하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가급적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출을 권고하며, 제출된 증명서류 상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안산시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 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시험 일정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면접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안산시청 홈페이지-채용정보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분 야	부 서	전화번호	비 고
채용절차	총무과	031)481-3107	
업무내용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	031)481-5905	

상록수보건소장(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I. 기본사항

1. 기관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보직가능 직급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상록수보건소장	일반직 또는 임기제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보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15
중기 및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0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등			10
6. 관련분야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과 관련된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보건행정 및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법규적·실무적 지식과 경험			

II. 직무수행요건

1) 의사면허소지자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소지자
나. 경력요건	<p>(학력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p>(자격증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자
	<p>(경력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 소지자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의료법」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 면허 소지자
나. 경력요건	(자격증 기준) ○ 관련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경력 기준)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의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나. 경력요건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능력요건

① 전문가적 능력

- i)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 ii)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 iii)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 i)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 ii)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 iii)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③ 변화 관리 능력

- i)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ii)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iii)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 i)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 ii) 업무개선능력
- iii) 자원활용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 i)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 ii)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iii)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 무, □ 유

② 외국어 : 없음

③ 정보화능력 : ■ 무, □ 유

④ 기타 특별요건 : ■ 무, □ 유